

의안번호	2212488
의 회 인	정동만 의원
회 답 일	2026. 1. 9.
추계번호	25A4742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지원사업의 종류)	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. 기본지원사업 :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. 특별지원사업 :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·시·군 및 자치구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. 홍보사업 : 전력사업(電力事業)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. 방재사업: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·지진·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관련 사업 5.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, 환경·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(조사·연구 활동을 포함한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지원사업의 종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지역에서 태풍·지진·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·위험지역 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, 특별지원, 기타지원으로 구분되고, 지원금은 제13조¹⁾에 따라 발전소의 종류·규모·발전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며 방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
 - 기본지원은 운영 중인 발전소의 발전실적 및 건설중인 발전소에 대한 추정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전원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주변지역(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)에 지원
 - 특별지원은 건설중 또는 건설예정 발전소 건설비의 1.5% 범위 내의 금액을 주변 지역에 지원
 - 기타지원은 발전소 운영에 대한 민간환경 감시기구 지원
 - 다만, 원자력안전위원회는 ‘방재환경기반구축’ 사업과 ‘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’ 사업을 통해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원자력안전위원회 ‘방재환경기반구축’, ‘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’ 사업 개요

세부사업 (회계, 코드)	주요 내용	예산(백만원)	
		2025	2026
방재환경기반구축 (원자력기금, 1902-402)	• 방사능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방사능방재체제 및 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	8,670	8,337
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(일반회계, 1403-301)	• 대규모 원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 현장지휘체계 구축 • 현재 7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 중, 한빛센터 공사중 -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(2026. 3월 준공예정)	7,274	1,904

자료: 원자력안전위원회

1) 제13조(재원과 지원금의 결정)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「전기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 부담한다.
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·규모·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개정안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방재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, 금액 등의 정보가 부재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